

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. 8. 20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빈 점포 임차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빈 점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빈 점포 임차료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의2제2항)

- (기존) 빈 점포 전·월세 보증금의 농협중앙회 대출금리 적용금액과 연간 임차료를 합한 금액의 50% 이내
→ (개정) 빈 점포 전·월세 보증금의 농협중앙회 대출금리 적용금액과 연간 임차료를 합한 금액 이내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8. 20. ~ 8. 25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<p>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>2024년 8월 일</p> <p>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</p> <p>담양군의회 의장 귀하</p>		

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를 “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신용협동조합법」 및 「산림조합법」”을 “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신용협동조합법」 및 「산림조합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담양군수(이하“군수””를 “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전단 중 ““임대료”란”을 ““임차료”란”으로, “지급되는”을 “임차인이 지급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「별표」”를 “별표”로 한다.

제6조의2의 제목 “(빈 점포 임대료)”를 “(빈 점포 임차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임대료”를 “임차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빈 점포 임차료의 지원은 전·월세 보증금의 농협중앙회 대출금리 적용금액과 연간 임차료를 합한 금액 이내로 한다.

③ 빈 점포 임차료의 지원기간은 임차 시작일 부터 2년 이내이며, 1사업자당 연 3백만원 한도로 한다.

④ 그 밖에 임차료 지원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의4를 제6조의3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임대료 지원대상자”를 “임차료 지원대상자”로, “임대료 납부”를 “임차료 납부”로, “임대료를”을 “임차료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환수하여야”를 “환수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중지하여야”를 “중지해야”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작성·보관하여야”를 “작성·보관해야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척하여야한다”를 “제척해야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회피하여야”를 “회피해야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.</p> <p>2. “금융기관”이란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,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신용협동조합법」 및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“이차보전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담양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.</p> <p>5.·6. (생략)</p> <p>7. “임대료”란 빈 점포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----- -----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신용협동조합법」 및 「산림조합법」-----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----- -----.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“임차료”란 ----- ----- 임차인이 지급하는 -----</p>

다. [본호신설 2018.12.27.]

8. ~ 11. (생략)

제3조(지원대상 및 지원내용) ① (생략)

② 군수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~ 8. (생략)

③ (생략)

제4조(제외대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·2. (생략)

3. 「별표」에서 규정한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

4. ~ 6. (생략)

제6조의2(빈 점포 임대료) ① 군수는 빈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빈 점포 임대료의 지원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농협중앙회 대출금리 적용금액과 연간임대료를 합한 금액의 50% 이내로

8. ~ 11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지원대상 및 지원내용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범위 -----

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제외대상)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별표 -----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빈 점포 임차료) ① ---
----- 임차료 -----
-----.

② 빈 점포 임차료의 지원은 전·월세 보증금의 농협중앙회 대출금리 적용금액과 연간 임차료를 합한 금액 이내로 한다.

하며,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농협중앙회 대출금리 적용금액의 50%이내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지정한 특화구역 내 특정종목의 경우 지원율을 80% 이내로 한다. <단서신설 2020.2.28.>

③ 빈 점포 임대료의 지원기간은 임대 시작일 부터 2년 이내이며, 1사업자당 연 3백만원 한도로 한다.

<신 설>

제6조의4 (생 략)

제7조(지원절차)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,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③군수는 이차보전 지원대상자와 협약 금융기관에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, 대출금융기관의 장은 자체 대출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후, 군수에게 대출

③ 빈 점포 임대료의 지원기간은 임대 시작일 부터 2년 이내이며, 1사업자당 연 3백만원 한도로 한다.

④ 그 밖에 임대료 지원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의3 (현행 제6조의4와 같음)

제7조(지원절차) ① -----

----- 제출해야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통지해야 -----

실행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빈 점포 임대료 지원 대상자와 건물주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고 임대료 납부 확인 후 임대료를 지원한다. [본항 신설 2018.12.27.]

제8조(지원중지 및 환수) ① 지원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2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, 새로 위촉된 위원^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
-----.

④ ----- 임차료 지원대상자-----
--- 임차료 납부 ----- 임차료를 -----.

제8조(지원중지 및 환수) ① -----

----- 환수해야 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중지해야 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위원의 임기) -----
----- 한 차례만 연임 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위원회의 회의) ①·②
(생략)

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
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14조(위원의 제척, 회피, 기피)

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
무에서 제척하여야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
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
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5조(위원의 수당 및 여비) 위
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
범위내에서 「담양군 각종 위원
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
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
할 수 있다.

제13조(위원회의 회의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작성·보관해야 ----.

제14조(위원의 제척, 회피, 기피)

① -----

----- 제척해
야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
- 회피해야 -----.

제15조(위원의 수당 및 여비) ---
----- 범
위-----

-----.